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
----------	----

제출연월일 : 2026. 8. 14.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서초구 청사 등의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중복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15조의2)

나. 구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조의2, 안 제11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5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6. 07. 09. ~ 2026. 07. 29. (20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한”을 “위하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한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3분의 1”을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국장 및 소장”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민간전문가”를 “민간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금고”를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 특별시 서초구 청사(구청사, 보건소, 구의회청사 및 서초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청사”라 한다) 등의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 ----- ----- <u>위하</u> <u>연</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 ----- ----- <u>설치한다.</u>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u>3분의 1 이상</u>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
② (생략)	----- <u>전체 위원수의 3분의 1</u> -----.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u>	② (현행과 같음) ③ ----- <u>국장</u> <u>및 소장</u> ----- ----- <u>구청장이 위촉한다.</u>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
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
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
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
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
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

1. (현행과 같음)

2. -----

민간 전문가-----

<삭 제>

<삭 제>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 ② (생략)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삭제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
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
한 조례」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기금 담당 과장이 된다.

<삭제>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
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4.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
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
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
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
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
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일반적인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및세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
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 -----

3. 4. (현행과 같음)

③ 기금운용계획안-----

-----.

<삭 제>

제15조(회계공무원) -----

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 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 위(계약사무 포함)는 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u>대하여</u>는 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1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은 <u>2026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u>결 과된</u>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 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u>대해서</u> ----- ----- -----.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 ----- ----- ----- <u>2031년 12월 31일</u> ----- -----. ② ----- <u>지 난</u>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 공공인프라과 이효진(02-2155-5314)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공인프라과	
연 락 처	(02) 2155-5314